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 .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구미시 소속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공통사항을 규정하여 관리함으로써 무분별한 위원회 설치를 제한하고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대상(안 제1조~제3조)

나. 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 제4조~제7조)

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안 제8조~제9조)

라. 회의의 운영 및 공개(안 제11조~제12조)

마. 회의록 작성 및 공개(안 제13조)

바. 위원회 관리 및 정비(안 제15조)

사. 위원 수당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붙임)

다. 합 의 :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소속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법령, 조례 등 관계규정에 따라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의 명칭을 불문하고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2. “당연직 위원”이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명시된 특정한 직위로 인해 해당 위원회의 위원으로 지정된 위원을 말한다.
3. “위촉직 위원”이란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위원을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총괄부서”란 시 소속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용역·공사”란 시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 연구, 조사, 계획수립, 설계 및 감리 등 각종 역무의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②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설치요건) ① 시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법령과 조례·규칙 등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2. 업무의 특성 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업무의 성질 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시정 수행에 자문·협의·심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시장은 설치된 다른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설치절차) ① 담당부서의 장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위원회 설치계획을 사전에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회 구성 및 임기

3. 위원회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을 때만 해당한다)

4.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의 업무대행자

5. 그 밖에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구성 근거,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지체 없이 위원회 구성일자, 기능, 운영계획, 위원명단 등이 포함된 위원회 설치 현황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존속기한)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규칙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성격·기능과 관련 있는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구미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시장은 동일인을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위촉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시의회 의원

2. 특수한 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3. 긴급한 사안에 의해 설치되는 위원회 또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심의·의결 등을 하고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④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으로 위촉하기 전에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제3항의 저촉 여부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로 하고, 동일 위원회에서 3회를 초과하여 연속해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별지 서식의 청렴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회 해당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스스로 사직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비위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경우
제10조(용역·공사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 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회의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의 내용이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서 비공개 하도록 규정한 경우와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시장 또는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개최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④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 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회의의 공개)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 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사유가 없으면 회의종료 후 10일 이내에 회의결과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에 공개가 어려운 경우에는 1회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정당한 청구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청구, 비용부담, 공개방법 등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해당하는 사항이나, 구미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않는다.

⑤ 위원장은 안건 심사 전에 해당 위원회의 토론 내용이 회의록으로 작성되어 시민에게 공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위원들에게 충분히 알려야 한다.

제14조(회의록 보존 및 열람) ① 제13조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보존한다.

② 제13조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회의 다음 회의 시 참석 위원들에게 열람 및 서명토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회 관리 및 정비) ① 총괄부서의 장은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설치된 위원회가 최근 3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조례·규칙 등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등) ① 위원회 소속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및 여비,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 시의회 의원이 위원자격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구미시 여비 조례」를 준용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개별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③ 제7조제3항 및 제5항, 제6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새롭게 위촉된 위원(연임을 포함한다)의 임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공포와 동시에 「구미시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구미시위원회회의록작성및공개조례」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구미 거의1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본문 중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 구미발갱이들소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③ 구미성리학역사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④ 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⑤ 구미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⑥ 구미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⑦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5항 중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⑧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⑨ 구미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본문 중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⑩ 구미시 관광자문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⑪ 구미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⑫ 구미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⑬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⑭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6 중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⑮ 구미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⑯ 구미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본문 중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⑰ 구미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8항 본문 중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⑮ 구미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본문 중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⑯ 구미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본문 중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⑳ 구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본문 중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㉑ 구미시 문화예술진흥 지원 및 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㉒ 구미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㉓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생가 등 주변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㉔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㉕ 구미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본문 중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㉖ 구미시 사회공헌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㉗ 구미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본문 중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㉘ 구미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㉔ 구미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㉕ 구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본문 중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㉖ 구미시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본문 중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㉗ 구미시 4-H활동지원기금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본문 중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㉘ 구미시 신라불교초전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중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㉔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본문 중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㉕ 구미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본문 중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㉖ 구미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㉗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㉘ 구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㉙ 구미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9항 중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㉚ 구미시 왕산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④① 구미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④② 구미시 인문학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본문 중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④③ 구미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8항 중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④④ 구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본문 중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④⑤ 구미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④⑥ 구미시 정원 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④⑦ 구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④⑧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6항 중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④⑨ 구미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본문 중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⑤⑩ 구미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전단 중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1> 구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본문 중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2> 구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3> 구미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항 중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4> 구미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본문 중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5> 구미시 청소년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본문 중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6>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본문 중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7> 구미시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본문 중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8> 구미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9> 구미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전단 중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60> 구미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61> 구미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본문 중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62> 구미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63>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64> 구미시사편찬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65> 구미시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66> 구미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67> 구미시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68>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중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69> 구미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70> 구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71> 구미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72> 구미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73> 구미팜 농특산물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본문 중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74>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75> 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 중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76> 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77> 구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구미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78>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 중 “구미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구미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5조 (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구미시위원회회의록작성및공개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구미시위원회회의록작성및소송수행자공개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지 서식]

청 럽 서 약 서 (제7조 관련)

○ 소 속 :

○ 직 위 :

○ 성 명 :

위 본인은 구미시 『 』의 회의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함은 물론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제척사유를 숙지하고, 그 사유 중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할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권을 행사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보장하며, 위원회의 회의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금품·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위 서약자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이하 "자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0조의2(자문기관의 구성) ①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0조의3(자문기관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및 시·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2. 시·군·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도위원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직 목표제”라 한다)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직종·직급·고용형태별 남녀 직원 현황
2. 관리직 남녀 비율 현황
3. 남녀 직원 근속연수 현황
4. 승진 대상자 중 남녀의 승진 비율
5. 남녀 관리직에 대한 연도별 임용 목표 및 달성 시기

⑤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주요 기록물의 생산의무) ① 생략

②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은 그 기록물의 원활한 생산 및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 ④ 생략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보존기간) ①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으로 구분하며, 보존기간별 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대

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통령기록물, 수사·재판·정보·보안 관련 기록물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존기간의 구분 및 그 책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 요인

- 위원회 소속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및 여비 지급에 따른 세출 발생이 예상됨(안 제16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위원 수당 등의 비용이 연 1억 원 미만으로 예상됨.

4. 작성자

- 기획예산담당관 기획계 윤정현(480-6503)

소 관 부 서		기획예산담당관
입 안 자	과 장	박 영 일
	담 당	박 상 진
	담 당 자	윤 정 현 (480-6503)